

❖ 정부시책 ❖

1종 전기용품 수입신고 폐지

앞으로 배선기구류·소형교류전동기 등 1종 전기용품 66개 품목은 수입개시 30일 이내에 국립기술품질원장에 신고토록 한 종전 규정이 폐지된다. 또 전자파 적합등록이 필요한 물품의 대상이 확대되며 일정수량 범위 내에서 퍼스널컴퓨터·모니터 등을 자가사용, 전시용 또는 제품성능평가를 위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일부전기용품의 수입신고제 폐지,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대상 품목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합공고를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통상산업부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사용방법상 위험 및 장애발생 우려가 적은 배선기구류·

소형교류전동기 등 1종 전기용품 6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개시 30일 이내에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고토록 하던 종전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또 전파법 관련고시 제·개정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이 필요한 물품의 대상을 넓혔으며 일정수량 범위내의 퍼스널컴퓨터·모니터 등을 자가사용, 전시용 또는 제품성능 평가를 위해 반입하거나 외국기술자가 일정기간 후 재반출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 등은 신고만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통산부는 수출용·연구시험용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 통합공고에 규정된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아 수입·통관토록 하고 대외수출여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이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中企 구조개선 1조원 支援

하반기 중소기업체에 1조원의 구조개선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

아 8月부터 하반기 구조개선자금 1조원을 연리 7%(외화자금은 LIBOR+1.5% 포인트내외)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체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제조업전업율이 50% 이상인 제조업체(대기업계열 중소기업체 제외)로서 공장등록증 보유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소기업 지원특별법상의 소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복수지원(추천)도 가능하다.

또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제조관련 서비스업체와 유통업체도 자동화와 정보화설비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장등록증이 없는 신규사업자도 기술개발사업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조건은 원화자금인 경우 연리 7%로 시설자금은 3년거치 8년(외화자금은 10년 이내, 거치기간 3분의 1포함), 운전자금은 1년 거치 3년간이다.

원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외화대출자금 등 外貨자금은 하반기 내내 지방중소기업청(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게 된다.

특히 시설자금은 희망하는 은행에서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동일업체당 최고 40억원(운전자금은 2억원)까지, 운전자금은 각 사업유형별로 시설자금의 30%나 최고 1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청서 1부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도입설비에 대한 견적서 및 카탈로그를 첨부해 가까운 중진공 지역본부나 지방중소기업청(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기업지원특별법상의 소기업이란 상시 종업원 50명이하, 사업장면적 500평방미터 미만의 제조업과 상시종업원 30명이하, 사업장면적 500평방미터 미만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를 말한다.

중소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가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를 늘리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

정·고시하고 8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기술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해당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가 공공기

관에 우선 구매를 요구할 수 있는 기술개발 제품 범위는 신기술(NT)마크, 우수자본재(EM)마크, 국산신기술(KT)마크를 획득한 제품 또는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제품으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로 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우선 구매기간을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정하고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우선 구매 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이 미흡한 때는 중소기업청장이 관계기관에 구매 증대를 위한 협조요청 및 시정조치를 재차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와 같은 요청을 받고도 관계기관의 구매 증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는 신문사 등 언론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제품 및 단체표준인증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조치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설명서, 사업계획서, 기술개발제품 입증 증빙서 사본 또는 품질인증서 등을 첨부해 중소기업청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청된 중소기업자의 우선 구매요청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 관계 전문가에게 동 제품의 기술개발내용, 수준, 성능 및 품질수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우선 구매제품 선정과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검토 의뢰를 받은 관계 전문가는 검토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중소기업청의 이와 같은 규정 제정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정부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성과가 미흡,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해석된다.

중소 기술인력풀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지도체제가 정비되고 그동안 명목상으로 도입됐던 기술지도인력풀(Pool)제도가 8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용된다.

중소기업청은 지금까지 운용해온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정밀측정기술력향상지도, 공장혁신지도, ISO인증획득지도, 유망선진기술

기업지도 등의 기술지도사업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데다 성과도 미흡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각 지도기관별로 협력제제가 구축돼 있지 못해 중복지도 등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 중소기업 기술지도협의체인 지도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연내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도기관간 공동지도방안 모색, 지도수요발굴, 지도기법 및 경험의 공유 등이 가능하도록 이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기술지도 내용중 유사한 내용을 통폐합해 지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도기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체가 쉽게 찾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

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기술지도인력을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술지도인력풀제를 8월부터 운영키로 하고 이미 지난 6월부터 약 3,500명의 전문가 등록신청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5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지도비용에 대한 기업부담률도 '98년 1월부터 20%(현재 10%)로 올려 기업의 관심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中企 우수제품 마크 변경 및 支援 강화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가 돌고래문양에서 태극문양의 GQ마크로 바뀌고 이 마크획득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돌고래 문양에 '우수'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존의 중기우수제품마크를, 국제성과 고유성을 동시에 갖춘 태극상징 문양의 GQ마크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GQ는 Good Quality, Government Quality, Global Quality, Great Quality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번 마크변경을 계기로 이 마크 획득 제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인데

Q마크 획득업체가 GQ마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공장심사 기준도 20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GQ마크 인증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도 준비중이다.

중기청은 그동안 중기우수제품마크 제품에 대해 카탈로그 제작·배포·홍보와 함께 신용보증 우대, 산업인력배정 우대 등의 지원을 실시해 왔다.